

건조중인 FRP 선박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음

< 재 해 개 요 >

2023. 5. 12.(금) 16:10경 전남 여수시 소재 ○○○ 사업장에서 어창내부 적층작업 중인 FRP 선박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3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하던 중 1명이 2023. 5. 17. 사망한 재해임

□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: 화상 / 사망 1명, 부상 2명



【화재발생 장면】

□ 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화재예방조치 실시

-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,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함 (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분위기를 낮추기 위해 환기팬 등을 사용한 강제환기를 실시해야 함)
-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.

○ 경화제 취급관리 철저

-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지와 경화제를 혼합하고, 경화제는 뚜껑이 있는 원래의 용기(또는 전용용기)에만 담아서 사용해야 하며, 사용 후에는 밀봉해야 함

- 작업장 내부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비치하여 사용하고 타 물질과 격리하여 저온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해야 함.

○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

-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,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
- 특히, 신규채용자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작업장소와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숙지상태가 미흡하므로, 작업시작 전 해당장소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한 작업절차 등을 철저히 교육해야 함.

○ 정전기로 인한 화재·폭발 예방조치 실시(권고)

- 정전기에 의한 화재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해야 함
-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, 제전복 착용,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함.

본 속보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센터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적절한 조치실시,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다.
인터넷 주소 www.kosha.or.kr/자료마당/재해사례/국내재해사례/조선업 클릭